

#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9-27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 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함

##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조~제3조)
- 지역사회와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 
(안 제5조~제10조)

## 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2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##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4】

- 입법예고 : 2023. 8. 4. ~ 2023. 8. 24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## 【붙임 1】

#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, 지역의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대학” 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 중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.
2. “상생협력” 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
  2.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 연계·개편을 통한 인재양성
  3.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직업 교육 고도화 추진
  4. 지역의 경제·일자리·문화·체육·관광·환경·보건 등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
  5. 교육부 등 중앙정부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한 혁신 및 특성화지원에 관한 사항
  6.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·연구
  7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2.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, 경제업무 담당 국장
  2.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 3. 지역대학의 총장 · 학장 또는 총장 · 학장이 추천한 사람
  4.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존속기한)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8조(의장의 임무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협의회의 운영)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시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평가 및 사후관리)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평생학습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평생학습과장 박 현 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평생학습행정팀장 박 은 혜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은 혜 (행정 2766)

#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277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. 10. 20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불필요한 자구 수정, 협력사업 범위를 조정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“상생협력”의 정의 조정 (안 제2조)
- 협력사업 범위 조정 (안 제4조)
- 상생협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조정 (안 제6조)

#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**모든 활동**”을 “**활동**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안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 2. “상생협력”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<u>모든 활동</u> 을 말한다.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활동</u> -----.
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4조(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 <u>7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②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략)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
1. (생략) <u>2.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 3. · 4. (생략) ④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<u>2.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